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5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김재방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31,513,540원, 지방교육세 222,661,640원, 농어촌특별세 111,33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4.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C'라는 명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원고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되,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그 100분의 50 초과분은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구성하고, 수익자는 49인 이하로 하며, 수익증권을 사모의 방법으로만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투자신탁을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대금을 신탁원본으로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 170,747,559,394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80,931,660원, 지방교육세 478,093,160원, 농어촌특별세 239,046,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2014. 1. 6.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2014. 1. 21.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이 등록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감면된 취득세 2,431,513,540원, 지방교육세 222,661,640원, 농어촌특별세 111,330,8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면규정은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제6조 제5항 본문),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면서 그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며(제9조 제18항 제1호),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정의하면서 '투자신탁재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9조 제20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제22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445조 제23호는 이에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의 각 정의규정에 부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해당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의 정의규정에 의할 때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감면요건 규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엄격해석원칙은 감면대상의 의미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하거나 유추함으로써 넓히지 말라는 것이지, 그 문언의 외연이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며, 보다 법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라는 요청이다.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감면대상을 확장 내지 유추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감면대상을 축소하여서도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면요건을 추가 내지 창설하는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게 된다면, 이 또한 법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감면요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다른 법규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해석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연혁,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규율,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의 각 정의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표현은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 '자본시장법의 각 정의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새기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적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록'이라는 새로운 감면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및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의 입법취지 및 도입경위에 비추어 보면, 양 제도는 그 입법목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 도입 당시 부동산간접투자기기구의 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연혁 등과 아울러 보더라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 사건 감면규정의 형식이 변경된 바 없으며, 이후 이 사건 감면규정의 형식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조항이 정비되면서 이루어진 단순한 어구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제정 내지 개정할 당시 그 감면요건으로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을 예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입법취지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는 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119조 제6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후 감면대상인 부동산간접투자의 형태가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고, 그 감면율이나 취득시한 등의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같은 조항에서 계속 존재하여 왔다(다만,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삭제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한편,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제도는 자본시장법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는 금융감독관청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등록 이후 행정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2007. 8. 3.> 제2조 제3호에 따라 2009. 2. 4. 폐지된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은 투자회사의 등록제도는 두고 있었으나(제41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제도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고,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려면 미리 작성한 신탁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산운용협회가 작성한 표준신탁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그 신탁약관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제28, 29, 30조), 사모간접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사전 보고 대신 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고(제28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75조 제2항), 금융위원회가 보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의 연혁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세 감면대상(제119조 제6항)은 '구 간접투자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제120조 제4항)은 '구 간접투자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간접투자법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써 위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등록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다.

② 2009. 2. 4. 구 간접투자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등록세 감면대상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었고, 한편, 취득세 감면대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등록세 감면규정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이라는 수식어구가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에는 그와 같은 수식어구가 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불일치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형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2010. 3. 31.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에는 등록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고, 취득세 감면규정에 '자본시장법에 따른'이라는 수식어구가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그와 같이 변경된 경위나 자본시장법의 기타 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 중 '자본시장에 따른'이라는 부분이 규정된 것은 다른 조항들의 규정형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표현 내지 어구가 수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의도 하에 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운용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야 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 내지 처벌규정을 둔 것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감면규정을 둔 입법목적, 감면규정의 연혁 등을 살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세금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투자신탁과 같은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전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었음에도(자본시장법 제76조 제3항, 제445조 제13호), 실제로는 구 간접투자법이 시행되던 때와 같이 투자신탁 설정 단계에서 투자대상 부동산을 물색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활용되어 왔다.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소수의 투자자가 적지 않은 액수를 투자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직후 투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이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관청은 이른바 공(空)펀드를 규제한다는 명목 아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공모방식과는 달리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신탁원본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종전처럼 신탁원본을 납입하고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지체 없이 등록하면 된다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한 정황이 엿보인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14. 4. 24.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결과 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제249조의6(시행일 2015. 10. 25.)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였다(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제249의20에서 등록에 관한 제18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 개정입법취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경우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소속 직원은 2011. 11. 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아 신탁을 설정하고 동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비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위 부동산 매수 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탁 재산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서대문구청장은 2011. 9. 28. 서울특별시장에게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여부가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1. 12. 5. 서대문구청장에게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아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재산을 운용하게 하여 투자대상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산, 즉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이후에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신탁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기에 앞서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탁원본을 마련하고, 원고가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경위에 비추어 투자자들 역시 취득세 감면조치가 유효함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일반 수범자들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라)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이 정하는 등록의 요건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은 집합투자업자가 쉽게 확인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소명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집합투자기구가 이러한 분명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82조 제6항).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자신탁이 2014. 1. 21.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록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하는 경우와 등록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이에 취득세 30% 감면이라는 조세감면혜택을 차별하여 적용할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민병국

판사 박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23. 제1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87조 제3항 관련)

59.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2007. 8. 3.> 제2조 제3호에 따라 2009. 2. 4. 폐지된 것)

제2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회사는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된다.

②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탁약관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2

5.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신탁약관을 제정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